2006년 8월 교육학석사(일반사회)학위논문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 > 이 송 현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n Low-Related Education in Social Studies of The High School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이 송 현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영 곤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이 송 현

이송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 심사위원장 | 조선대학교 | 교수 | 인 |
|-------|-------|------------|----|
| 심사위원 | 조선대학교 | 교 수 | 인 |
| 심사위워 | 조선대학교 | 교수 | ၇] |

200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 서 론 | 1 |
|-------------------------------|----|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B. 연구의 방법 | 3 |
| | |
| Ⅱ. 법교육의 이론과 구성 | 4 |
| A. 법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 | 4 |
| 1. 법교육의 의의 | 4 |
| 2. 법교육의 중요성 | 5 |
| B. 법교육의 목표 ····· | 7 |
| 1. 법 교육의 일반적 목표 | 7 |
| 2. 법교육의 행동 영역별 목표 | 10 |
| 3.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의 목표 | 11 |
| C. 법교육의 내용 구성 ······ | 13 |
| 1. 법교육의 내용 선정(Scope)의 원칙 | 13 |
| 2. 법교육의 내용 배열(Sequence)의 원칙] | 16 |
| | |
| Ⅲ. 7차 교육과정「법과 사회」과목 내용 분석 2 | 20 |
| A. 목표 분석 2 | 20 |
| B. 내용체계에 따른 분석 ···· 2 | 25 |
| C. 법 영역별 분류에 따른 분석 ····· 2 | 28 |
| D. 내용 선정·배열에 따른 분석 ····· 3 | 30 |
| E. 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 3 | 34 |
| 1 사례와 파례 | 34 |

| 2. 사진과 삽화 | 36 |
|-----------------------------|----|
| IV. 교육 과정기별 법교육의 내용변화 | 39 |
| A. 교육과정기별 고등학교 법교육 비중 변화 | 39 |
| B. 법교육의 법 영역별 내용분석 ····· | 40 |
| 1. 헌법 영역의 내용 분석 | 41 |
| 2. 일반법 영역의 내용 분석 | 41 |
| | |
| V. 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6 |
| A. 문제점 ····· | 46 |
| 1. 비중적 측면 | 46 |
| 2. 내용적 측면 | 47 |
| 3. 형식적 측면 | 51 |
| B. 개선방안 ····· | 51 |
| 1. 비중상 개선방안 | 51 |
| 2. 내용상 개선방안 | 53 |
| 3. 형식상 개선방안 | 56 |
| | |
| VI. 결 론 ······ | 63 |
| | |
| 참고문헌 | 67 |

표 목 차

| < 丑 | ∏ −1> | 법교육의 의의 | 5 |
|-----|--------------|---------------------------------|-----|
| <丑 | Ⅱ -2> | 목표 체계 | l 1 |
| <丑 | Ⅲ-1> | 일반적 목표에서 추출된 「법과 사회」교과 목표 분석 '2 | 21 |
| <丑 | Ⅲ -2> | 「법과 사회」의 목표 체계 | 23 |
| <丑 | Ⅲ-3> | 「법과 사회」과목의 내용 체계 2 | 27 |
| <丑 | Ⅲ-4> | 단원별 법 영역 분류 2 | 28 |
| <丑 | Ⅲ -5> | 법 영역별 비중 분석 2 | 29 |
| <丑 | Ⅲ -6> | 초·중·고등학교 법교육 주요개념의 발달 (| 30 |
| <丑 | IV -1> | 각 교육과정기에 따른 법교육 내용의 양적 변화 | 10 |
| <丑 | IV-2> | 교육과정기별 법교육의 헌법 영역 변화 | 41 |
| <丑 | IV-3> | 교육과정기별 법교육의 일반법 내용 분석 | 42 |
| <丑 | IV-4> | 제3차 ~ 6차 일반법 영역의 우선순위 | 45 |
| <丑 | V -1> | 제 7차 교육 과정의 사회과 편제 | 17 |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n Low-Related Education in Social Studies of The High School.

- Focusing on Law & Society in the 7th Curriculum -

Lee Song-Hyun

Adviser: Prof. Kim Young-Gon

Major in Gener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oday's society is in pursuit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Individual people's every social life is associated with law directly or indirectly, no matter whether they want it or not. Law is the standard of human behavior, and doesn't exist for specific people only. Instead, that is a national device to protect all the people's right, and it's mandatory to know about law in modern life. Accordingly, law-related education gains in importance, and nobody can deny its oughtness as part of schoo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law-related education and to delve into how law was instruction in high school. Especially, whether a new subject titled Law & Society was in line with the current 7th national curricula was examined and its textbook was analyzed in order to show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high school law-related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s for the quantitative weight of law-related education in each of the past and

current national curricula, the 7th ones gave less weight to that, as just five pages were allocated to that, which accounted for 2 percent of the whole pages. Even though law starts to be educated as one of the independent subjects, it isn't a mandatory course, and lots of students who don't choose that have far less chance to learn about law. Given the fact every high school graduate must acquire fundamental legal knowledge, this phenomenon is extremely concerning.

When the 'Law & Social' textbook was analyzed, it's found that the textbook included the defini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general principles and gave an even introduction about every relevant area. In terms of content and repetitive learning, its sequence was good since there was a proper link between elementary school grade 6 and middle school grade 2, the 10th grade. In addition, the textbook offered appropriate law-related knowledge in consideration develop-mental stage. Regarding its compliance with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a in view of textbook contained law theories in its main body to let learners acquire general knowledge. As for the function of law, its value and learner attitude, the textbook put great stress on inquiry activities to have them look into legal issues on their own and reach a rational decision so that they could have an appropriate attitude toward law.

Compared to the former national curricula, the current ones took a significant step to offer law-related education as one of the separate classes. Furthermore, they made a deeper approach to legal issues, instead of enumerating difficult theories. Real cases and precedents were provided to enhance the relevant thinking faculty of learners, and the curricula tried to conduct education in due order in consideration of their cognitive and moral development. All the attempts could be said to make a big contribution to attaining the object of law-related education.

However, there was something to be desired. Economic laws weren't handled in more detail. It should be mentioned that several types of laws, such as family registry system in family law, are likely to change over time. Although the present curricula presented much more precedents or cases than before, students should be allowed to gain access to more diverse cases or latest precedents. And the types of photo or illustrated materials that represent typical contemporary legal phenomena should be selected to provide stronger motivation to learners.

As the importance of law is increasingly accentuated in modern society, high school should direct its energy into actualizing constitutionalism and teaching students to make a rational judgment of legal phenomena, have proper problem-solving skills, respect for basic human rights and be well cultured as eligible members of democratic society. And they should additionally be instructed to respond to increasing international disputes or problem situations in a appropriate and flexible manner, as it's now the globalization era.

Besides, it's additionally required to come up with better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methods and take other necessary ac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educational system.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가 법치주의임을 생각할 때, 개인의 사회생활은 법률관계로 귀결되어 심지어는 개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과직접적인 연관을 갖기도 한다.

법이 인간의 행위기준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법은 특정인의 독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존재하고 있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법에 대한 인식은 생활의 필수적 요건이며, 사회 생활을 위한 하나의 교양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법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더욱이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언제나 무죄가 되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이 개인의 권리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사장되고 만다. 자신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에 관한 이해는 곧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 하겠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법은 단지 권력자의 명령일 뿐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는 예로부터 법이 지니는 강제 수단으로서의 성격만을 인식해 온데 그 주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근대적인 법 제도도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강요된 것이었기에 이러한 법 인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잦은 법의 개폐와 숱한 정치적·사회적 비리로 인해 법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어, 건전한 법의식이 성장할 토양이 마련되지 못하였다.2)

¹⁾ 홍성찬, 『법학개론』(서울: 박영사, 1997), pp.3~4.

실제로 고등학교 대상 법의식 조사3)에서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보다 부 정적 개념이나 의식이 앞서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것은 증 대되는 법률 지향적 사회로의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의 법의식은 법적 무력감 또는 법에 대한 냉소주의와 기피심리에 의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는 결론을 낳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자신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리 존재의 확인 및 권리 행사방법을 획득 하는 필수적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즉,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 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죄를 범하여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본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법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적 수요와 질서의식의 도야를 이루어내며 교육의 지표 또한 인간의 행동변 화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는 권리, 의무의 교육 또는 법지식이나 법의 원리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습되어져야 함은 그 근거가 명백하다. 특히, 법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다양하고 독특한 법교육 과정을 통해 법적 소양과 법적 사고력의 효율적 계발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험이나 법적 개념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법교육이 심화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의 일환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목의 일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법과 사회」가 신설된 것도 법교육의 중요성 및 학교교육으로서 법교육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법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법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백히 설정하여 본질을 파악하고, 고등학교 법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방향을 정립,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 교재로 신설된 「법과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현 교육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지의 적정성 탐색 및 교

²⁾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211.

³⁾ 류성욱, "고등학교 학생의 법의식과 법교육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pp.32~39.

과서 내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법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법교육 및 교육과정의 기초이론에 관계되는 제 문헌과 법교육에 관한 연구물, 관련 자료를 통해 문헌을 비교·분석·종합하며, 선행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법교육에 해당되는 자료를 추출하여 본 논문의 내용에 맞게 재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고등학교 법교육으로 한정하여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제 7차 교육과정에 실시되는 법교육 관련 교과서와 교육과정 해설서 및 각종 문헌을 병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이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법교육이 지향하는 이론적 구성을 통해 법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명백히 하고,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구성상의 조직원천을 알아봄으로써 법교육 전반적 이론을 제시한다.

둘째, 제 7차 교육과정의 독립 과목으로 신설·시행되고 있는 심화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다각적 측면의 내용 분석과 내용에 맞는 준거 제시 및 그 기준에 의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큰 테두리로 고등학교 법교육의 내용 변화 추이에 따른 분석 및 법 영역별 내용 분석을 통해 제 7차 교육과정의 시행 이전 법교육의 흐름을 개 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의 정황과 위 치를 파악한다.

넷째,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법교육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교육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Ⅱ. 법교육의 이론과 구성

A. 법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1. 법교육의 의의

법교육은 복합적이고 변동하는 사회에서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이해력, 기능, 태도와 바른 평가를 개발할 수 있는 기 회를 학생들과 교사에게 제공하는 학습의 경험의 조직을 의미한다. 즉 유능 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지 식과 법체계 및 절차 등을 학습한다. 이에 따른 법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첫째, 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의 의미, 필요성 및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즉 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이념으로서의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대한 가치와 이들 사이에 상호 관계를 인식시키고, 법적 질서의 필요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법의식을 고취시켜 법적 분쟁해결을 실현한다.

둘째, 기초적인 법적 개념과 원리 등 법지식을 습득시키고, 법적 사고에 입 각한 기능과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셋째, 법체계와 법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존경심을 기르며, 법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로 잘못된 법의식과 법문화의 쇄신을 촉진하다.

넷째, 법교육은 특정한 사회구조 속의 법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토록 함으로써 문화와 생활양식 등에 깊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⁴⁾ 김원주 외, 『법학통론』(서울: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1991), p.2.

다섯째, 학습자의 법사회화를 의도적으로 조성·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인 법의식을 제고시키고 바람직한 법문화 형성에 이바지한다.

여섯째, 학습자들에게 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예방·방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생활태도를 육성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 법교육의 의의

| 개인의 자아실현 차원 | 사회의 정의 실현 차원 | | |
|---|--|--|--|
| 법적 소양의 배양 법적 사고의 형성과 정의 감각의 습득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 형성 기본적 인권의 보장 합리적인 법적문제 해결 능력 | 법적 질서유지와 불법행위의 해소 법의 지배 정당한 입법과정에의 참여능력 개발 법체계와 절차에 대한 존경 공공복지 증진과 사회정의 실현 바람직한 법문화의 형성 | | |

사회과에서 법교육은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법지식과 법원리를 습득시키고 법적 문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적 사고(Legal mind)를 육성해 주는데 그 1차적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교육은 실용적인 법지식의 습득이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존재(Sein)의 학습과정임과 동 시에 바람직한 사회상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당위(Sollen)의 교육이 다.5)

2. 법교육의 중요성

법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시민성 교육에 기여한다. 오늘날 법치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이란 인간을 존중

⁵⁾ Linda W. Rosenzweig,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ocial studies Washington D.C: NCSS*, (1982), p.83.

하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자유에 따르는 책임,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이고 법질서의 수호를 통한 정의실현 및 국가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서 법영역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사실상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의 요소가 대부분 법과 밀접하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R. Freeman Butts 교수는 미국 사회과 교육협의회(NCSS)에서 제시한 훌륭한 시민의 자질이나 특성 24가지 요소 중에 13가지 요소가 자유, 평등, 기본적 인권, 법률 및 정치체제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6)

이 13가지 요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만인에게 기회가 평등하다는 신념
- ②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적 가치관 구비
- ③ 법과 법집행 기관에의 존중심
- ④ 민주주의 원칙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의 행동이나 정부의 정책 및 실천 내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 ⑤ 선거권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실천하기
- ⑥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실천하기
- ⑦ 공공복리를 앞세우고 존중하기
- ⑧ 법상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 기본 사상임을 알기
- ⑨ 재산권을 존중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여 재산권 행사상의 규제 준수하기
- ⑩ 공정한 사업의 실천과 공정한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 ① 정부의 조치로 필요시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경쟁적인 경제체계의 유지
- ② 책임 있는 가족 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대해 공민적 책임을 이행하기
- ③ 세금납부를 지역사회 봉사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한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의 중요성을 C. Pereira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7)

⁶⁾ 김병수, "시민교육으로서의 사법교육 강화의 필요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p.20에서 재인용.

첫째, 법교육은 입헌주의 국가에서 교양 있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성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따른 지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식,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둘째, 법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책임감 있는 시민의 태도가 향상되어 비행동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적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 사용을 자제하며, 당국에 범죄를 신고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셋째, 법교의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교수활동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은 학습방법에서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증가시켜준다.

넷째, 법개념, 법적 사실 등은 역사, 정치, 경제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의 근원, 기능, 절차, 법적 원리들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이다.

B. 법교육의 목표

1. 법 교육의 일반적 목표

법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에게 법의 기본적 성질, 역할을 학습시켜서 법과 인간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는 법교육은 학습자에게법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시키며, 법적 개념과 지식을 배향해 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그들이 공민으로서 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바람직한 태도나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8)

⁷⁾ C. Pereiea, Law-Related Education in Elimentary and Secondary School New York: ERIC, (1998), p.3.

⁸⁾ 최인화, "사회과 법교육의 원리와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법교육을 실현시킴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Paul Freund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9)

- ① 지속적인 도덕적 결정 도달의 실천과 그것들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분석에 대한 학습을 하기
- ② 법적 절차와 법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평가능력의 개발
- ③ 법에 관한 지식, 정보의 획득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초·중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은 기본적인 법개념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법적 문제 상황에 자신의 법적 소양을 응용할 수있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되 도덕 및 윤리 교육적인 접근도 함께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적 지식과 민주적 태도 그리고 법지식을 기초로 법적 갈등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법적문제 해결 능력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체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능력, 법을 포함한 사회규범의 준수에서 나오는 민주적 정치 참여 능력, 준법질서의식의 형성들이 법교육의 결과로 도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기본권 보장 및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법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대해서는 게르라흐(R. A. Gerlach)와 람프레히트 (L. W. Lamprecht)교수의 견해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① 학생들에게 사회와 그의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법적 제도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신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조장한다.

^{1889),} pp.28~29.

⁹⁾ U.S Office of education. *Final of the study group on Law-Related Educat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ht, Education, and welfare, (*1978), ED175737, p.38.(상계논문, p.29에서 재인용.)

¹⁰⁾ Richard E. Gross dt al., Social Studies for our Time, p.355. (상계논문, p.30에서 재인용.)

- ② 법과 법체계에 관련된 학생들의 태도, 가치관, 지각 등을 명료화하도 록 한다.
- ③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여 준다.

그리고 법교육의 일반목표를 넬슨(Jack Nelson)과 미샬리스(John U. Micharlis)교수가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의 법제도, 법절차, 시민의 권리와 책임성 그리고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 ② 중요한 법적 개념, 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정의, 평등, 준법절차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③ 청소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과 사고력 증진을 기한다.
- ④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법적 주제와 쟁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읽고 토론하는 기능을 개발시킨다.
- ⑤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고 우리의 법체계를 개선하고 참여하기 위한 의지와 실효성에 대한 감정을 발전시킨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법교육의 일반 목표는 "법률현상에 관한 법개념과 이론을 익혀 이를 현실의 법생활에 활용토록 하여 개인 및 타인의 권리와 공공복리를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정의실현과 준법을 생활화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라고 도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법교육의 일반목표를 앞에서 내린 정의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법교육의 일반목표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의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각 행동 영역별로, 각 학년별로 또다시 목표가 서술될 수 있기 때문 에 법교육의 일반목표를 지나치게 세분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교육의 일반목표를 "법과 관련된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여 정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법이 념에 따라 능동적으로 법생활에 참여 한다."¹¹⁾라고 정의 하고 있다.

2. 법교육의 행동 영역별 목표

위에서 언급한 일반목표를 전제로 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부목표를 지식, 기능, 태도 그리고 윤리적 측면으로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법지식 목표로서,

- ① 기본적 인권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이해
- ② 우리의 법체계와 영미법체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 ③ 실정법주의자와 자연법론자의 입장 창이 이해
- ④ 기본적 인권의 내용과 법리에 대한 판례를 통한 이해다음으로 법적 기능 목표로서.
 - ① 법적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는 것
 - ② 판례나 중요 법적 사례에 따라 법적 해결을 위한 가설 검증을 하는 것
 - ③ 필요한 경우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
 - ④ 법적 기록물의 이해, 작성, 활용
 - ⑤ 변호사에의 사건 의뢰 절차 인식
 - ⑥ 법적 문제 발생 시 혹은 법적 갈등 상황에서 법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

마지막으로 정서적 목표인 법적 가치 · 태도 목표로서는,

- ① 사회에서 법적 권위에 대해 존중심을 보이는 것
- ② 법의식과 법문화의 차이가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에 있을 수 있음을 아는 것
- ③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 ④ 법의 변동과 발달의 추세를 전망할 줄 알며 이에 대응해 나가는 것
- ⑤ 자신의 행동에 책임과 의무가 따름을 자각하는 것 등이 열거되고 있다.

¹¹⁾ 전석재, "고등학교 법교육 교재의 교육과정 적합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9), p.7.

이상에서 살펴본 법교육상의 지식적, 기능적 그리고 가치·태도상의 목표에 이르는 여러 목표를 조화 있게 달성함으로써 법적 소양을 지닌 유능한 시민육성이 가능하리라 기대되며, 이들은 각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한 법적 갈등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와 법적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기본적 인권과 공공복리와의 균형 있고 조화 있는 관계를 실현시켜 법적 평화를 이루고 바람직한 법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의 목표12)

현행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인 「법과사회」에 나타 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Ⅱ-2> 목표 체계

| 총괄 목표 | 하위 목표 |
|---------------------|--------------------------|
| | ・ 법 현상 이해 및 설명 |
| 법 현상 이해 증진 | • 자료 분석 및 추론: 법 현상과 쟁점 및 |
| | 발전 방향 전망 |
|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 • 자료 분석 및 추론 |
| 합식 사고를 못 문제 해결 등록 | · 쟁점 규명 및 가치·태도 명료화 |
| | · 법체계·법질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
| 책임 의식 및 능동적 참여태도 함양 | 태도 증진 |
| | • 능동적 참여 능력 및 태도 증진 |

a. 법 현상 이해 증진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흔히 법을 단순한 명령이나 금지 규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스컴에서 다루는 내용이각종 범죄와 그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금지나 명령이 법의 전부인

¹²⁾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211.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그에 규율되는 시민들을 도와주고 장려한 환경의 성격도 아울러 지닌다.

b.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법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그 적용의 범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법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입각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적인 분쟁이나 논쟁과 관련한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입장 둘째, 이러한 문제의 원인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사용하는 수단들

넷째,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들

다섯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획일적인 교육 내용보다는 이러한 문제 제시를 통해 학생들의 법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판례나 기타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c.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태도 함양

학생들은 법 교육을 통해서 단지 법에 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어야 한 다. 즉, 학생들이 법 관련 자료의 내용과 그 본질을 통해 자신과 주위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가치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법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재 진술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구성 원으로서 자신과 소속 집단의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방법과 절차를

제시 할 수 있으며, 법과 관련된 보고서나 기록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

셋째, 법적 문제 사태와 관련된 사건 기사나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적 갈등이나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며, 법치 사회 구현과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행정·사법 과정의 전 영역에 민주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넷째,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법체계와 법절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며, 자유와 권리의 행사에는 책임과 의무를 고려하여 공공 복리증진과 사회질서 유지와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C. 법교육의 내용 구성

1. 법교육의 내용 선정(Scope)의 원칙¹³⁾

법교육 내용은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법교육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교육의 내용 선정에 대해서는 경험중심의 실용주의적 입장과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학문적 성과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경험주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 교육 내용이일상생활과 유리될 수 없다는 당위성과 현명한 시민생활에 필요한 문제 해결능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현실적 유용성에서 출발한다. 반면 후자는 사회과학의 성과나 방법 그리고 개념을 중심으로 한 학습을 의미하는 데 학문적방법의 체계적 학습은 사회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법교육의 내용선정은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당면한 교통문제,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환경권 침해 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당면한 교통문제,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환경권 침해 문제 그리

¹³⁾ 최인화, 전게논문, pp.35~40.

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형제도의 타당성, 토지 공개념 문제, 안락사의 허용문제 등과 같은 법적 쟁점과 문제를 주로 다루어 그 해결책을 강조한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주요 개념 이해와 이론체계를 익히기를 기대하는 두 번째의 입장은 예컨대 Wisconsin주에서 법교육의 주요개념으로 들고 있는 12가지(사회계약, 법, 정의, 정당성, 권한 및 권위, 적정절차, 책임성, 사생활의 자유, 재산권, 법체계, 자유, 윤리등)의 개념을 관련되는 실정법 조항이나 판 례등과 결부시켜 이해하려고 한다.14)

a. 법적 개념 중심의 내용선정

법적 개념 중심의 법 교육 내용의 선정은 학교 급별에 따라서 그 범위와 영역은 다르며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법적 개념은 보다 정밀·복잡화되어가고 이들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형태로 반복하여 제시된다. 예컨대 자유(Liberty, Freedom)에 대한 법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자유에 대한 일반적 성질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구속, 복잡한 교통환경 등을 예로 제시하여 그 의미를 습득케 할 수 있으며, 중·고교 수준에서는 자유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자유, 표현의 자유 등으로 나누어 이들을 주제로 삼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건들을 연결 지어 원리에 대한 규명을 시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Michael Hartoonian 교수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법교육이 규칙, 공정성, 질서, 자발적 복종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15)

b. 실용적 법지식 중심의 내용선정

이는 전통적인 법교육의 주된 방법인 강의 중심의 지식, 가치, 원리에 대한

¹⁴⁾ 김연식, "고등학교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22.

¹⁵⁾ Theodore Kaltsunis, Teaching Social Studies in the Elemsntary School Englewood Co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7), p.303. (최인화, 전게논문, p.36에서 재인용.)

무비판적인 전달 교육을 탈피하여 현실의 법적 갈등 상황이나 잘 알려져 있는 법적 사건을 학습대상으로 채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심과 법적 사고력을 배양케 하는 방법이다. 즉 법체계와 법제도의 운영에 대한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주입식·암기식 법교육을 떠나 학생 스스로가 거리에서 경험하고 TV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법적 사건 및 쟁점 등에 대하여 그 해결책과 원리등을 법적 차원에서 탐색해 가는 교육방법이다.

예컨대 마약, 유산,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인권의 제한, 토지 공개념의 문제, 안락사,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공개재판과 언론보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학생의 권리와 교내 폭행문제, 컴퓨터 범죄, 소비자 보호, 공해 문제 등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 관심사항 등을 취급하고 그 합리적 해결까지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 장점이 있다.

한편 실용적 법지식 중심의 내용선정은 학습대상이 중·고교의 수준에 이르러서야 법지식의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특히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유, 평등, 정의 등 기본적 법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한 법률(예: 소비자 보호법, 공해 방지법, 독과점 금지법, 토지 관련법등)의특정한 법적 사태에의 적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c. 바람직한 법교육 내용 선정 기준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점점 더 규칙과 법률에 의해 지배받아 가는 현실적 측면과 현대 민주주의의 국가는 곧 법치국가임으로 법에 의하여 모든 사회현상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을 함께 생각한다면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마땅히 존재의 문제만큼이나 당위의 문제를 동시에 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다 가치 있는 시민성 육성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훌륭한 시민성은 지적 사고와 도덕적 행위를 포함하는 합리적 의사 결정 행위가 공공의 문제에 적용되는 특질을 지녔다고 할 때, 바람직한 법교 육의 내용선정은 법적 개념과 실용주의적 법지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리라 고 본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법교육의 내용선정은 기본적으로 먼저 기초적인 주제 및 개념으로서 권위, 권리와 책임, 정의, 평등, 사생활의 자유, 권력, 재산, 자유, 시민성, 법 원칙, 법과 도덕, 헌법의 기본이론 등에 대하여 법적 이해를 시킨 후에 실생활에서의 법적 쟁점과 중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가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 Wisconsin주의 교육성에서는 앞에서 보았던 법의 기초개념 및 이론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과실, 계약법, 가족법, 교육법, 소비자법, 상법, 형법, 민법, 판례법, 소년법 등에 관한 기초내용을 초등학교 4,5학년 단 계에서부터 학습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법교육 과정의 내용들이 학생의 발달과정에 따른 법적 사고력 형성에 가장 유용하게 선정되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는 H.Taba의 선택 기준들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17)

- 타당성: 추출된 개념들은 학문을 적절하게 대표하는가?
- 중요성: 개념들은 오늘의 세계에 대해 중요한 국면을 설명하는가?
- · 적정성: 개념들은 학생들의 성숙 수준이나 흥미·욕구에 맞는 것인가?
- · 균형성: 개념들은 폭과 깊이게 있어 학생의 발달을 허용하는 것인가? 등의 기준이 고려된다.

2. 법교육의 내용 배열(Sequence)의 원칙

법교육 내용 배열에는 학문적 논리에 따른 배열,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배열, 그리고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른 배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¹⁶⁾ Wisconsin Departement of Instruction, Descriptors for Law-Related Education. p.17 (최인화, 상게논문, p.4에서 재인용.)

¹⁷⁾ 장순애, "법교육이 민주시민 자질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1993) p.33에서 재인용.

a. 법교육 내용의 논리적 구성에 따른 배열

법적 개념의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것으로, 직접 경험이나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경험하고 지각하는 순서 및 탐구능력의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법교육의 학문적 내용인 법적 개념원리의 효율적인 습득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학교 급별에 따른 법교육의 내용 배열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사회 기능적요소를 강조하여 법교육 전반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초적인 법개념을 포괄적으로 가르치며 중·고교에 이르러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에 법의 기본원리를 응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탐구 지향적인 현대사회의 문제 등을 깊이 다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18)

b. 학습자의 발달단계(인지발달 및 도덕성발달)에 따른 배열

법교육의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자의 사회인식 수준과 도덕적 발달단계에 맞추어 통합되고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에 대한 학습은 기본적으로는 추상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효율적 학습과 이해간의 차 이와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대체로 형식적 조직사고 능력이 없다면 개인들은 사회 속의 법의 역할을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된다.

Jean Piaget이론의 기본적 사상을 전수받은 L. Kohlberg의 경우도 인습적도덕성의 수준(Level of Morality)에 이르게 되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법을 옹호·지지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도덕성 발달의 단계 중 3단계에서는 선량한 소년 소녀를 지향(Good Boy, Good Girl Orientation)하게되고, 4단계에 이르면 사회 질서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후관습적인 도덕성(Post Conventional Morality)

¹⁸⁾ 최인화,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1992), pp.24~25.

의 수준인 4단계에서 민주적으로 법을 수용(Universal, Ethical Principle)하게 되는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 정의,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에 대한 존엄성 등의 보편적 원리를 내면화시키는 단계라고 본다.19) 이러한 Kohlberg의 마지막 단계는 Kant의 두 가지 명제인 "① 인간을 항시 목적으로 추구할 것이며수단으로 취급치 말라. ② 행동하는 원칙으로서 우주법(혹은 자연법)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하라"는 원칙을 충족시키는 단계가 될 것이다.20)

그러므로 법적 개념의 이해는 L. Kohlberg의 "3수준 6단계" 중 학습자가 4~5단계(예: 4단계 - 법에의 복종, 의무이행, 사회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5단계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 사회계약의 존중태도 단계)에서 상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법교육 내용의 학습자 발달단계를 고려한 배열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구체적 조작 사고의능력과 이해 정도를 감안하면 구체적인 법개념과 지식을 경험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시기에는 구체적인 법적 사실 및 쟁점을 이루되 추상적 사고, 형식적 조작능력의 활용이 가능한 보다 고차원적인 법원리의 응용과 도출 등이 이루어지도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법교육의 내용배열은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서 가능하고, 학습자의 발달과 요구에 부응하려면 개인의 발달단계에 수반되는 법적 개념, 지식구조 가 통합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다.

c.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배열

법교육의 내용 배열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고 관찰이 가능한 법률관계, 법적 체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법적인 추상적 사고와 논리의 전개를 필요로 하는 국가 및 세계 차원의 법 관련 쟁점이나 관계들을 분석·이해시

¹⁹⁾ 장순애, 전게논문, p.39.

²⁰⁾ 최인화, 전게논문, p.44에서 재인용.

켜 나감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회 생활 관계나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라 내용 배열은 처음에 사적 개인 본위인 것에서 점차로 전문적인 사회 지향적인 법개념이 원리들이 배열되어 가야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내용은학년, 학교 급별의 성향에 따라 심화되고 반복되는 나선형의 개념발달(The Sprial Development of Concepts)형태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내용배열은 법의 기초이론 및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의무의 내용을 학습시키고 난 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사법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행정법, 형법 등 개인과 국가 및 공공단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중심의학습내용 구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교육 내용 배열은 가급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 유발이 되는 법적 사실 및 쟁점, 문제 상황을 선택하여 법적 사고력의 배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7차 교육과정 「법과 사회」과목 내용 분석 및 법교육의 이론과 구성

「법과 사회」 내용 분석에서는 목표, 내용체계, 단원별 내용, 법 영역별 분류, 내용 선정 및 배열, 자료의 적절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할 것이며 각 분석 내용에 맞는 준거를 영역별로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A. 목표 분석

미래 사회가 법률 지향적 사회이며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응과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의 제고가 요청되는 현실을 볼 때 제7차 교육과정의 법교육 목표는 이러한 법 현실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교육의 독립된 교과인 「법과 사회」에서 목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과사회」에서의목표 분석을 전제로 하여 각 내용 영역별 분석으로의 적정성 관계가 유지의기준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과 교과서의 일부분으로서가아니라 독립된 사회과 교과목으로서 「법과 사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의가 크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이론적 배경으로 다루었던 법교육의 일반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일반적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의 여부와 동시에 현행교육과정 목표에의 부합정도, 또한 시대적 법적 요구에 의한 부응이 얼마나포함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법 교육의 중요 내용을 전제로 일반적 목표에서 추출된 법 교육의 목표를 교과서에 맞게 재구성하여 이를 「법과사회」과목의 목표와 부합되도록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영역으로 분석하여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일반적 목표에서 추출된 「법과 사회」교과 목표 분석 21)

| 구성요소 | | 지식 | | 기능 | | | | 가치 | • 태도 |
|--|---|-----|-------------|----------------|----------|----------|----------|----------|------|
| | | 개 념 | 일 반 화 | 정보 수집 활용 | 탐구 기능 | 의사 결정 | 집단 참여 | 합리 적인 | 바람 |
| 1. 법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능이해 | 0 | 0 | 0 | 0 | 0 | | | | |
| 2. 개인, 집단 간의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 0 | 0 | 0 | 0 | 0 | 0 | | | |
| 3. 개인의 권리 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방법과 절차 제시 능력 | | | 0 | 0 | 0 | 0 | | 0 | |
| 4. 법적 기록물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 현상 전망 능력 | | 0 | 0 | 0 | 0 | 0 | | 0 | |
| 5. 법적 문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배양 | | 0 | 0 | 0 | 0 | 0 | 0 | 0 | 0 |
| 6. 능동적으로 법 생활에 참여하는 자세 | | | 0 | | | | 0 | 0 | 0 |
| 7. 자유 민주 사회의 법체계와 절차에 대한 긍정적 태도 | | | 0 | | | | 0 | | 0 |
| 8. 공공 복리증진과 사회 질서 유지의 조화에 노력하는 자세 | | | 0 | | | | 0 | 0 | 0 |

이러한 구성에서 「법과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목표를 세분화하면 먼저총괄목표, 하위목표, 단원별 목표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런 목표의 명확한세분화는 법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와 학습대상인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명확한 내용전달을 이룰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려운 법과목을학습함에 있어서 세분화된 목표의 설정에 따라 자신의 법체계의 형성과 법인

²¹⁾ 전석재, "고등학교 법교육 교재의 교육과정 적합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9), p.49에서 인용.

지적·법적의적 형성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는 법 사고의 형성과정 및 법적 문제 해결에서 사고의 과정을 보다 체계화 할 수 있다는데의의가 크다.

또한 법의 일반적 목표에서도 법지식과 기능목표, 정서적 목표를 세분화하여 나누고 있으며 법적 개념과 이론측면, 현실에서 법 생활화 할 수 있는 활용능력, 개인 및 타인의 권리와 공공복리의 존중 및 민주 시민으로서의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의실현과 준법의 생활화를 정서적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목표와 사회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행동영역별 목표의 세분화는 법적 일반 목표와 본 「법과 사회」과목의 목표 설정이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는 먼저 법적 사실의 구별, 법조항의 사실적 해석에 따른 인지 상황을 비롯한 각종 법 개념의 인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실적, 개념적 이론이 법의 일반화까지 확대되어 목표가 설정되었는가에 대한 여부를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정보수집활용이나 탐구 기능, 의사결정 및 집단 참여의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각 구성요소별 목표 내용이 적절히 배치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정서적 목표에 해당되는 가치·태도의 측면에서도 개인적 가치와 바람직한 가치의 충돌 시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요소별 구성 내용을 확인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제 4요소의 목표인 '법적 기록물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현상 전망능력'과 제 5요소의 목표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배양'에서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행동 영역별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임을 알 수 있고 각 영역별 목표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법교육에 있어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목표내용임에 분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제 1단원이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의 단원을 추출하여 목 표의 체계를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법과 사회」의 목표 체계²²⁾²³⁾

| 총괄 ·법 현상 이해 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책임 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 | | |
|---|--|--|--|
| |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 | |
| 하위 목표 | 법 현상 이해 및 설명 자료 분석 및 추론 : 법 현상과 쟁점 및 발전 방향 전망 자료 분석 및 추론 쟁점 규명 및 가치・태도 법 세계・법질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 증진 능동적 참여 능력 및 태도 증진 | | |

| 대단원 | | 단위 I,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
| ই | 지식 · 이해 | 법 규범과 다른 사회 규범(도덕, 관습, 종교 등)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법은 사회 전서 유지와 기본권 보장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며,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을 법치주의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어떤 세한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 급 목 표 | ' ' | 법이념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을 분류할 수 있다. 법 적용의 원칙인 상위법 우선, 신법우선, 특별법 우선,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법체계와 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나 쟁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
| | 태도 |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자세를 갖춘다. |

²²⁾ 이 표는 교육부,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사용 지도서』(주-교학사, 2002), p.40.과 교육부, 『고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212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23) 「}법과 사회」 과목은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1단원인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한 단원만 추출하여 그 예시적 성격을 나타내도록 하겠다.

법교육의 일반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과목목표의 목표설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법과 사회'과목은 법학의 학문체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법적 소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형성하는 학습목표를 선정한다.
- ② 법 개념이나 기초이론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현실의 법적 사례를 풍부하게 동원하여 학습자에게 관심이나 흥미를 유시하도록 하고, 필수적인 법적 소양을 계발하도록 한다.
- ③ 학습 목표 설정 시 총괄목표와 하위 목표를 고려한다.24)

이러한 목표 설정의 원칙에서 <표 Ⅲ-2>의 목표 체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에서도 나타나듯이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에 대한단원의 목 표를 볼 때 법일반 원칙과 권리 행사 의무의 이행에 따른 범위와 제한을 제 시함으로써 지식적 측면의 개념과 이론을 소개 하고 과목의 첫 단원인 만큼 법학의 학문체계의 안내의 역할을 위해 법규범과 사회규범의 차이점을 제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법적 소양에 대해 서도 자유와 평등의 법치주의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할 수 있 게 함과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나 쟁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 고 합법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목표의 제시 또한 「법과 사회」의 교육 과정상에 나타나있는 법교육의 목표와 법 교육 법 일반 목표의 정신을 잘 반 영해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교육의 행동영역별 목표인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목표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각 영역별 목표의 체 계화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목표 및 법 일반 목표에 부합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 계를 분석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법적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 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

²⁴⁾ 최강병, "법과사회 과목의 학습목표 상세 화와 내용선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30에서 재인용.

태나 쟁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자세를 갖춘다.'라는 법 목표를 보아 법 개념이나 기초 이론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현실의 법적 사례를 풍부하게 동원하여 학습자에게 관심이나 흥미를 유지하도록 하고, 필수적인 법적 소양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내용체계에 따른 분석

법교육의 내용은 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 등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교육의 내용은 법학통론체계에 의한 법률 해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으로하여금 법적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교육의 내용이 학생으로 하여금 개별 법규에 대한 이해에 앞서 첫째, 기본적으로 법은 무엇인가 둘째, 법은 어떻게 생성, 해석, 적용 되는가 셋째, 법의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행위간의 상호 관계등과 같은 문제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은 법이 부여하는 권리의 정당한 사용과 이에 수반하는 의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의 개념과 이념, 법의 과정, 법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약하면

첫째, 법의 개념과 이념에서는 법의 핵심적 내용, 적용 법위,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의 배양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 법의 제정, 해석, 적용을 포함하는 법의 과정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법도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제도, 관습 및 문화의 산물이 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행위자 (법관, 분쟁 당사자, 경찰 및 검찰 등) 또는 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성격과 기능 및 그 상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와 같은 실제적인 응용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시켜 주기 위해 중요하다. 요컨대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와 별개의 것으로서의 법체계가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것으로서의 법체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5)

이러한 내용은 법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예시한 것이다. 「법과 사회」의 내용 체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 영역 및 주제 그리고 내용 요소는 '내용 체계'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서술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법 교육 목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의 학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생의 응용 능력을 고려하여 기본 개념을 강조하되, 법의 과정과 관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지식의 유용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할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 영역에 속하는 것일 경우가많기 때문이다.

둘째, 법교육의 내용은 가능한 한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법 교육 내용의 수준은 학생들의 이해 능력, 주어진 교육 시간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²⁵⁾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사회)』(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p.251~216.

셋째, 논쟁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연계된 논쟁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판적사고와 문제 해결을 통해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 체계화 기본 원칙을 주안점으로 하여 「법과사회」의 내용 체계를 보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법과 사회」과목의 내용 체계²⁶⁾

| 영 역 | 주제 | 내용 요소 |
|------------------|---|--|
|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법의 의의와 구조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권리와 의무 | 법의 개념과 기능 법의 이념 법의 분류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 법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
| 개인 생활과 법 | ·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 가족 관계와 법 ·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미성년자의 권리 가족 간의 법률관계 민법의 기본 원리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부동산 거래와 등기 |
| 사회 생활과 법 | · 학교생활과 법 · 여성과 법 · 소비자의 권리 보호 · 근로자의 권리와 법 · 환경과 법 | 교사와 학생의 권리 여성의 권리 여성과 법적 쟁점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 구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법 사회 보장 제도 환경 문제와 법적 해결 |
| 국가 생활과 법 | 기본권 보장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범죄와 형벌 재판의 종류와 원칙 국제법과 국제 분쟁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행정 조직과 법치 행정 행정 구제 제도 형법과 범죄 예방 재판 절차와 종류 국제법과 국제 분쟁의 해결 |
|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 · 법문화와 법의식 · 법률 구조 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 | 법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 한국의 전통적 법문화 선진외국의 법문화 법률 구조 제도 법의 변천과 미래 사회 미래 사회의 법적 쟁점 |

²⁶⁾ 상게서, pp.216~217.

C. 법 영역별 분류에 따른 분석

「법과 사회」는 법교육의 독립된 신설 과목으로 다양한 법 영역으로의 접 근과 동시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화 과목의 성격상 충분한 내용 조직 및 편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단원별 법 해당 영역과 전체 법 영역의 분류 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단원별 법 영역 분류

| 대단원 | 해당 법 영역 | | | | |
|--------------------|----------------------------|--|--|--|--|
| I.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법 일반 | | | | |
| 1. 14 9 14 24, 41 | (개념, 종류, 효력, 해석, 적용, 준법 등) | | | | |
| п 케이 제하기 비 | 민법(총칙, 민법, 일반), 가족법, | | | | |
| Ⅱ. 개인 생활과 법 | 상속법, 물권법, 채권법 | | | | |
| Ⅲ. 사회 생활과 법 | 교육기본법, 헌법, 근로기준법 | | | | |
| nv 그 गे शेही जो भो | 헌법, 민법, 행정법 | | | | |
| Ⅳ. 국가 생활과 법 | 형사소성법, 민사소송법, 국제법 | | | | |
| V.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 법철학 및 법문화 | | | | |

<표 Ⅲ-4>에서 보듯이 법체계의 전반적인 법 원리를 설명하는 법 일반의 내용과 법의 범위의 확대 면에서 중요시되는 민법 및 헌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원의 처음에는 법 일반의 개념, 종류, 효력, 법해석의 유형, 법 적용, 준법에 대한 법 입문의 성격을 고려한 단원의 배치를 하였고 '개인 생활과 법'의 제 2단원에서는 공법 영역보다 사법의 영역을 먼저 배치함으로써 민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었다. 민법에서도 총칙이나 일반적 개념 이외 가족법이라든지 친족 상속법, 물권법, 채권법 등 민법의 영역을 이전 법 교육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제 3단원에서는 개인에서 사회생활로 확대되어 본 단원에 맞는 사회법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서 학교에서의법 교육을 고려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주체를 바탕으로 한 교육 기본법을 제시함과 함께 사회법의 헌법상 어떻게 연결되고 관련되는지 법 영역의 배치

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법상 노동법영역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분류 및 영역별 배치를 보여준다. 제 4단원은 국가 생활에서의 법을 통해 공법 영역인 행정법과 국제 법을 다루면서 법적 큰 테두리의 헌법과의 연계성을 나타내고 공법 영역 이외 형사 소성법과 민사 소성법 등 절차법의 분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의 법적 사고나 법적 태도에 대한 적응을 위해 법 교육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그러나 정서적 목표에의 부합 및 법 생활의 유동적인 적응과 유지 적 관점의 필요에 부합하는 법철학과 법문화를 다루어 과목의 체계화, 세분화, 각 영역별 적절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법이나 상법의 영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제와의 접목을 위한 법교육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은 「법과 사회」의 법 영역별 비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 영역별 양적 측면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 법 영 역 | 면수 | 법영역 | 면수 | 법영역 | | 면수 |
|--------|----------|--------|----|--------|-------|----|
| 법해석·적용 | 3 | 교육법 | 8 | | 총칙 | 12 |
| 법의개념 | 6 | 형법 | 11 | [편] | 친족법 | 8 |
| 형식종류 | 5 | 형사소송법 | 3 | _ | 상속법 | 2 |
| 법일반 | 7 | 민사소송법 | 2 | 법 | 채권법 | 2 |
| 헌법 | 33 | 국제법 | 7 | | 물퀀법 | 7 |
| 인접 | - 33 | 수 세 집 | 1 | 법의 | 식ㆍ법문화 | 11 |
| 노동법 | 6 | 소비자보호법 | 6 | 법률구조 및 | | 10 |
| | | | | 디 | 래사회 법 | |
| 행정법 | 13 | 환경법 | 5 | | | |

<표 Ⅲ-5> 법 영역별 비중 분석27)

<표 Ⅲ-5>에서는 기초적인 법지식 형성에 중요한 헌법과 법 일반의 원리 그리고 영역의 체계가 큰 민법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헌법과 민법의 비 중이 32~33면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각 교육과정기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 법과 헌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²⁷⁾ 오은아,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59에서 재인용.

그 외의 법 입문의 역할로써 필요할 법 일반의 내용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법과 사법의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공법의 비중이 사법의 영역보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정법이나 법 이론의 측면에서 탈피해 법적 구제의 방법을 보다 구조화 시키고 미래 사회의 법 생활의 대비, 혹은 세계화에서의 법문화 인식 등에도 초점을 두어 적지 않은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절차법과 친족 상속법 등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어 각 법 영역별 구성 내적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분배되어 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D. 내용 선정·배열에 따른 분석

앞서 법교육의 일반적 접근, 즉 이론적 측면에서의 내용선정과 배열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법 이론적 구성에서 제시한 부분과 최인화의 '초·중·고등학교 법 교육 주요개념이 발달'의 표를 분식 준거로 하여 「법과 사회」내용 선전과 배열을 분석하도록 한다.

<표 Ⅲ-6> 초·중·고등학교 법교육 주요개념의 발달²⁸⁾

| <i>1</i> 단 | 계(초등학교) | 21 | 단계 <i>(</i> 중학교 <i>)</i> | <i>3</i> 단계 (고등학교) | 실정법과 의 |
|---------------|---|------------------|---------------------------------|---|------------------------|
| 기본 개념 | 일반적 진술 | 하위 개념 | 일반적 진술 | 하위개념 및 법적 용어 | 관련 |
| 권위 와 권한 | 국가에는 개인과 사회를 강제적으로 다스리는 힘이 있다. | 합법성 강제력 권한 | 국가의 각 기관에는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다. | 합법성, 각 기관의 권한 강제력, 구속력, 정당성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

²⁸⁾ 최인화, 전게논문, pp.183~185.

| 정의 | 법이 있어서 정의 롭고 평화로운 사 회가 만들어졌다. | 존엄, | 법이 특정한 집단이 나 계층을 위한 도구 로 전략해서는 안된 다는 것에 대한 확고 한 신념을 가진다. | 정의실현, | 법철학 법사회 사회법 |
|-------------------|--|------------------------------------|--|---|------------------------|
| 책임 과 의무 | 사회 생활에서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 도덕이건 법이건 스스 로의 양심을 따라 지 킬 수 있는 자세가 필 요하다. | 준법정신 법률적 불이익 법률적 제재 의무 (공법상, 사법상) | 공법 사법 사회법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은 개인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원 칙이다. | 사생활의 자유, 명예와 신용의 훼손 금지 | 개인의 사적 생활에는 개인의사에 따르는 것 이 원칙이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이 있 다. | 사생활의 자율성 타인의 간섭금지 개인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금지 | 헌 번 먼 법 면 행 |
| 평등 |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은 필수 | 의 평등, | 자유와 평등은 결부 되어 있기 하고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 | 헌법 행정법 형법 사법 |
| 적 법 절 차 |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국가는 강제 력을 행사한다. | 법률주의 제정과 개정, 동의, 승인 |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 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다 잘 보장 될 수 있다. | 법률주의, 영장주의, 적법 절차에 따른 보호, 법체계 | 형법 행정법 소송법 민법 |
| 재산 | 누구에게나 각자의 몫이 있음을 인정 한 다. | 손해배상, 손실보상, 사유재산 불가침 | 각자의 못을 인정 하고 자기의 몫을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 l ' | 민법 형법 경제법 |
| 권리 | 법에는 누구에게 일정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정권, 시민의 권리 | 권리 행사는 사회평화와 공공복리에 적합하며 신 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 사하되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 여성의 권리, 피고의 권리, 시민의 권리, 참정권 | 헌법 민법 형법 |

| | I | | | Г | |
|---------------------------|---|---|--|--|---------------------------------------|
| 자유 | 인간은 태어났을 때 부터 여러 가지 자 유를 갖고 있다. |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 개인의 존엄성보장에는 자유와 평등은 필수적 수단이다.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절대적 자유, 상대적 자유, | | 법철학 헌법, 정치 관계법, 언론 관계법 |
| 계약 | 법률관계는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 법률관계 계약. 권리와 의무 | 계약을 맺음으로서 사회구성원 간에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 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다. | | 민법 상법 사회법 소송법 |
| 정당성 | 법과 법체계는 국민 의 동의와 지지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 | 정 치 권 력 의 정당성 | 자유 민주사회는 법치 주의의 실천으로 정당 성을 획득할 수 있다. | 일반의지, 법적 정당성 | 공법 민법 |
| 신의 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 | 모든 법 생활관계는 신의성실 및 권리 남 용 금지에 따른다. | 신 의 성 실 · 권리남용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금지 원칙에 의해 법질서와 정의가 실현 된다. | 민법의 일반 원칙 | 법 일 반 민 법 |
| 법치 주의 | 자유 민주사회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이다. | 법과 규범 사회통제 법의 기능 법의 이념 법의 목적 | 기본권 인권의 보장과 정의사회실현은 법치주 의 사회에서만 가능하 다. | 법률유보 법치행정의 원리 특별권력 관계 | 법일반 법철학 |
| 헌법 기초 이론 |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는 법이 다. | 기본권종류 헌법의 | 헌법의식은 모두 민 주시민이 갖추고 있 어야 법치주의 사회 실현이 앞당겨 진다. | 헌법의 법적성질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헌법기관 기본권의 종류와 특징(인간의 존엄 과 가치,자유,평등 권,생존권,참정권, 청구권) | 법일반 행정법 정부조직 |

학습자의 사회 생활관계나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라 법교육 과정상의 내용은 처음에 사적 개인본위적인 것에서 점차로 전문적이며 사회 지향적인 법개념 원리들이 배열되어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내용은 학년별 상향에 따라 심화되고 반복되는 나선형 개념발달 형태를 취하여야 함이 계열성 및 내용 배열의 기본 원리가 되는 사항이다.29)

이에 법률관계 확대의 측면에서 「법과 사회」 내용 선정과 배열은 법의기초이론 및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파악 하게한 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의 사적 활동의 영역을 점차 넓힌 범위에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법 교육이 사회 기능적 요소를 강조하고 법교육 전반적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초적인 법 개념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법과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수준 및 중학교의 법교육 과정을 좀 더 심화하는 내용구성을 하고 있다. 즉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에 대해 법의 기본원리를 응용하고 또 응용된 법 지식과기능에서 그것을 현실생활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판례를 비중있게 활용하였고, 이러한 사례에서 법 쟁점을 도출하여 법적 사고체계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유도하는 것은 탐구 지향적인 구성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 된다

또한 법의 기초이론 및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탐구한 뒤에 행정법, 형법 등 개인과 국가 및 공공 단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중심의 학습내용이 구성된 것 또한 내용선정이나 배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큰 맥락에서 보면 단원 전개 체제를 보면 전교과서에 하나의 전개 체계에서 탈피해 단원, 주제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전개 체제를 적용을 시도하였다. 또한 내용선정에서는 핵심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경험, 사례·판례중심, 학생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이것은 교과서 내용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²⁹⁾ 최인화, 전게논문, p.183.

<표 Ⅲ-6>에 제시된 주요 기본 개념으로 제시된 15항목에 대해서도 「법과 사회」에서는 그 내용과 깊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실정법 관련하여서도 각 법 영역을 고루 제시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위 기본 개념 중 '재산'에 해당되는 경제적 법 영역, 즉 고등학교의 발달에서 다루어져야 할 항목으로 분류된 사유재산 불가침의 내용이나 유가 증권에 대한 경제법 등 경제법 영역으로서의 법 내용 선정 및 배열은 그 구 성이 미약하였다.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 할 때 '학교생활과 법'에서 교사와 학생간의권리 의무를 편성한 것은 발달단계에 따른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의 법 교육으로 그 내용 구성이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권리등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여 권리 행사의 대상이 어느 정도이며 가령 피고인에게까지 주어지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얻고자 하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그 시사점이 없어 보여 안타까웠다. 이에 권리에 대한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E. 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여기서는 교과서 형식상 체제로서 초점을 두기보다 사례, 판례의 내용상 적절성과 사진, 삽화 등의 자료의 제시가 해당 단원의 내용에 잘 부합하고 내용상 상징적인 논지가 있는 것인지 그 적절성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범위는 「법과사회」 교과서 대단원 Ⅱ. 개인 생활과 법 단원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하며 사례・판례의 적절성 분석은 탐구활동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 사례와 판례

a. 단원 1.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본 단원에서 제시된 '사망의 시점'에 대한 사례는 법 쟁점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많은 이론에서의 학설 대립 있음을 학습자로 하여금 인식시킬 수 있 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그리고 사망의 시점은 개인의 권리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시되지만 상속법이라든지 의료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서 본 단원에서의 제시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사례는 혼인을 쟁점으로 미성년자의 능력을 흥미롭게 풀이한 사례이며 혼인에 대한 미성년자의 능력과 더불어 성년의제의 법적용을 통한 권리 능력의 변동을 제시함으로써 현실감 있고 동기 유발적 측면의 사례로 적절하다고 본다.

b. 단원 2. 가족 관계와 법

'혼인의 성립요건'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의 효과'에 대한 사례는 현시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혼의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권리문제나 재산 분할의 문제 양육권 문제를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이며 '혼인의 성립요건'에서는 현사회적 이슈가되고 있는 동거의 문제를 적용시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및 공식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고 절차 혹은 배우자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수령의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례로서 각색하여 제시하는 것 보다 실제 최근의 판례의 제시가 많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모 계약'에 대한 사례 또한 사회적 이슈에서의 법 쟁점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대리모라는 법적 사실적 용어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대리모 계약의유·무효 대립에 대한 탐구를 통해 법적 사고의 체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또한 '친권의 행사'에서와 같이 친권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상속의 순위와 효과'에서는 법정상속에 대한 법률과 법적 상속분의 비율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습상속 등의 기본적인 상속법의 인지와 더불어 요즘 .교통발달 및 사건사고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현실적 최근 판례의 도입을 통한 탐구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겪었던 판례를 통해 가령, 지하철사고나 비행기추락사고, 대형여객선 침몰 사건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 상속의 예가 아닌 동시사망의 추정의 원리에 따른 상속문제라든가 상속의절차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더욱 합치될 것으로 본다.

c. 단원 3.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등기부 등본 내용 분석'의 탐구 활동은 탐구 절차를 통해 법 생활의 기능 적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적절하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실제 판례의 예를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수행할 여지 가 높은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감 있는 탐구활동이라 보여 진다.

'세입자의 설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나 소액 임자인의 최우선 변제권 등, 법적 보호 장치 등을 통해 권리 보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례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는 불법행위의 여부가 특수한 불법행위 즉,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나 사용자의 배상책임, 공작물 또는 동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무과실 책임등의 접근을 통해 사례 및 판례의 해결과정을 탐구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사고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다.

2. 사진과 삽화

「법과사회」교과서 Ⅱ. 개인 생활과 법 단원에서는 사진 20개, 삽화 13개의 분량을 제시하고 있어 제 6차의 법교육에 비해 자료의 제시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삽화의 경우, 삽화의 기능적 접근 이론을 설명하면 모든 형태의 삽화가 똑같이 교과내용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삽화의 여러 형태는 다양한 다른 학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로부터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삽화를 사용 하는 데는 삽화가 작용하는 여러 기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삽화의 기능적 접근이론은 학습자의 인지과정에서 삽화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삽화를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학습의 실제 효과는 교과서의 내용(언어요소)과 관련해서 다르다는 것이다.

삽화의 교육적 기능에 과심을 갖고 교과서에 있어서 삽화 제작의 많은 창의적인 원리를 개발한 K. U. smith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능을 가정하였다.

- ① 삽화가 독자를 지각적으로 동기화 시키며,
- ② 읽을 것을 지각적으로 상화하고,
- ③ 언어 자료의 의미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삽화는 동기유발, 활동 안내, 자료제공, 활동 결과 제시기능을 갖고 있다.30) 본 교과서에서는 주로 본문 내용 혹은 탐구 자료제시의 내용 즉, 읽을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자료 제공이나 활동 안내의 기능은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본문의 상징적 의미 강화 이외에 친족관계의 법률에서 '친족의 형태'의 삽화 제시는 본문의 내용의 상징적 의미 강화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계보도를 통해 지식적 기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의 제시에서는 비교적 제 6차의 그것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시대적인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각적인 보충자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법원'의 사진제시와 부동산 거래와 등기의 소단원에서 제시된 부동산의 간판만이 담긴 사진 '부동산 중개소' 자료의 제시 등은 본문 내용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자료 30) 오은아, 전게논문, p.66에서 재인용.

의 첨부라 보기 어렵다. 단순히 건물이나 용어에 집중된 사진의 제시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 보여 지며 사진자료의 제시에 있어 어떠한 목적을 갖고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Ⅳ. 교육 과정기별 법교육의 내용변화

A. 교육과정기별 고등학교 법교육 비중 변화

여기서는 과정기별 법교육의 변화를 연구한 여러 선행논문(김광호, 2000; 임일모, 2002; 추연경, 2002)처럼 각각의 교육과정기별³¹⁾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내용체계, 단위구성조직 및 개정배경에 따른 분석을 하지 않고 사회과에서 법교육의 양적인 면의 증감정도와 헌법 및 일반법 영역에서의 전체적인추이, 법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 내용 변화 등을 표와 함께 제시하여³²⁾ 현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의 내용과 비교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 위치 및 정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법교육의 내용 양적 변화는 선택과목이 아닌 공통 기본과목으로서 해당학 년을 거치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에서의 추이를 나타 낸 것이다.

이는 인문, 자연계, 혹은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졌을 경우 법교육의 유무 정도와 접하는 양적 정도가 달라지므로 고등학교 기본 이수과정에서 전체학생이 어느 정도의 법교육을 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각 교육 과정기에 따른 법교육 내용의 양적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표 Ⅳ -1>과 같다.

³¹⁾ 교수요목기(1946~1954), 제1차교육과정기(1954~1963), 제2차교육과정기(1963~1974), 제3차교육과정기(1974~1981), 제4차교육과정기(1981~1987), 제5차교육과정기(1988~1992), 제6차교육과정기(1992~1997), 제7차교육과정기(1997~).

³²⁾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교과서 중 법교육 관련 단원과 법교육 독립교과인 심화선택과목 「법과사회」에 대한 분석은 따로 분류하여 하기로 한다. 단, 전체적인 양적 측면의 분석에서는 공통기본과정에 속하는 고등학교 '사회'과목을 포함시켜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한다.

<표 Ⅳ-1> 각 교육과정기에 따른 법교육 내용의 양적 변화³³⁾

| 그 0 귀 자 | 그스 스 모 키 | 제1차 | 제2차 | 제3차 |
|---------|----------|--------------|--------------|---------|
| 교육과정 | 교수요목기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 과목명 | 공민 | 일반사회 | 일반사회 | 정치・경제 |
| 전체 면 수 | 192 | 254 | 277 | 237 246 |
| 법교육 면 수 | 177 | 185 | 84 | 86 68 |
| 비율(%) | 92 | 73 | 30 | 36 28 |
| 교육과정 | 제4차 | 제 <i>5</i> 차 | 제 <i>6</i> 차 | 제7차 |
| 正年478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 과목명 | 사회 I | 정치・경제 | 공통사회(상) | 사회 |
| 전체 면 수 | 344 | 334 | 260 | 313 |
| 법교육 면 수 | 44 | 50 | 15 | 5 |
| 비율(%) | 13 | 15 | 6 | 2 |

각 교육과정기에 따른 법교육 내용의 양적 변화를 보면 교수 요목기의 법교육은 교과서 총 192면 중 177면으로 92%에 달하였으나, 제1차 교육과정기에 73%, 제2차 교육과정기에 30%, 제3차 교육과정기에 36%(28%), 제4차 교육과정기에 13%, 제5차 교육과정기에 15%, 제6차 교육과정기에 6%로 감소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불과 5면의 2%에 불과한 분량으로 줄어들었다.

전체적 추이로 보아 공통 기본과정으로서의 법교육은 점차 그 양적인 면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을 한정하여 본다면 비록 '법과 사회'의 법교육 독립교과가 생겼다고는 하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통기본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과사회'를 선택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에 대한 기초적인 법교육이 고등학교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도 불합리한 구조이다.

B. 법교육의 법 영역별 내용 분석

³³⁾ 오은아, 전게논문, pp.24.

1. 헌법 영역의 내용 분석

<표 IV-2> 교육과정기별 법교육의 헌법 영역 변화³⁴⁾

| 시기 | 교수 요목기 | 제1차 교육 과정 | 제2차교 | !육과정 | 제3차 교육 과정 | 제4차교 | '육과정 | 제5차 교 | '육과정 | 제6차교 | '육과정 |
|-----------|-----------|-----------------|------------------|-------------------|-----------------|--------------|-------------------|--------------------|-------------------|-----------------------|------------|
| 계열구분 | 공민 | 일반 사회 | 일반 사회 (공통) | 정치· 경제 (인문) | 정치 · 경제 | 사회 I (공통) | 사회· 문화 (인문) | 정치 · 경제 (공통) | 사회· 문화 (인문) | 공통 사회 상 (공통) | 정치 (인문) |
| 총 페이지 | 192 | 254 | 277 | 284 | 246 | 344 | 228 | 334 | | 260 | 254 |
| 헌법 영역 | 160 | 185 | 37 | 140 | 40 | 8 | 44 | 50 | | 6 | 48 |
| 비율 (%) | 83.3 | 72.8 | 13.4 | 49.3 | 16.3 | 2.3 | 19.3 | 15.0 | • | 2.3 | 18.8 |

교육과정기별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전체 내용 중 헌법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제 1차 교육과정에서 제2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을 때는 인문계열을 제외한 학생들의 법학습량은 37페이지에 불과하며, 무려 148페이지가 감소되었고, 제3차교육과정에서 제4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될 때에도 인문계열이 있다고는 하나 공통과목으로의 헌법영역은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제5차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을 때는 인문계열의 헌법영역이 제외되었다. 이는 헌법의 특성상 시대적 배경에 따라 교과 내용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공통과목과 인문계열로 나누어 제4차 교육과정 때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 일반법 영역의 내용 분석

³⁴⁾ 임희창, "고등학교 학생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992), p.71.

<표 Ⅳ-3> 교육과정기별 법교육의 일반법 내용 분석³⁵⁾

| ĨĨ, | <u> 1</u> 육 | <u> </u> | ት | 제] | l차 | 제2 | 2차 | | 제3차교 | 유과정 | |
|-----|----------------------|----------|-----|----|-----|----|-----|-----|------|-----|------|
| 과: | 정기 | 요목 | | | 과정 | 교육 | | 79 |)년 | 80 |)년 |
| | 법 역별 | 행 | % | 행 | % | 행 | % | 행 | % | 행 | % |
| 기 |]의]념 | 188 | 38 | | | 55 | 62 | 36 | 4.6 | 19 | 3.8 |
| 3 |]식 류 | 83 | 17 | | | 34 | 38 | 34 | 4.5 | 26 | 5.2 |
| Š |]의 [력 | 69 | 14 | | | | | 31 | 4.1 | 23 | 4.6 |
| 히 |]의]석 | | | | | | | 20 | 2.6 | 19 | 3.8 |
| | 질서 - 법 | | | | | | | | | 57 | 1.1 |
| 소 | :계 | 340 | 69 | | | | | 121 | 15.8 | 144 | 28.4 |
| 행: | 정법 | | | | | | | 111 | 15 | 70 | 14 |
| | 벌 | 30 | 64 | | | | | 71 | 9.3 | 35 | 70 |
| 소· |]사 송법 | 64 | 13 | 60 | | | | 29 | 3.8 | 14 | 2.8 |
| | <u>]</u> 사 송법 | 59 | 12 | 14 | | | | 17 | 2.2 | 7 | 1.4 |
| 소 | -계 | 153 | 31 | 74 | | | | 228 | 30.3 | 126 | 25.2 |
| | 총칙 | | | | | | | 56 | 7.3 | 46 | 9.2 |
| 민법 | 물권 | | | | | | | 40 | 5.2 | 31 | 6.2 |
| 인법 | 채권 | | | | | | | 45 | 5.8 | 19 | 3.8 |
| | 신분 | | | | | | | 43 | 5.6 | | |
| 싱 | 납 | | | | | | | 56 | 7.3 | 31 | 6.2 |
| 소 | :계 | | | | | | | 240 | 31.2 | 127 | 25.4 |
| | 동법 | | | | | | | 32 | 4.2 | 28 | 5.6 |
| | 제법 | | | | | | | 23 | 3.0 | 23 | 4.6 |
| | 회 장법 | | | | | | | 54 | 7.1 | 52 | 10 |
| | :계 | | | | | | | 109 | 14.3 | 103 | 20.2 |
| 국: | 제법 | | | | | | | 68 | 8.9 | | |
| 총 | -계 | 493 | 100 | 74 | 100 | 89 | 100 | 766 | 100 | 500 | 100 |

³⁵⁾ 상게논문, p.72.

| JI. | <u>।</u> क | 저 | | | 제5차 | 교육과정 | 8 | 제6차교육과정 | | | | | |
|--------|------------|------|------|----|------------|------|-----|---------|------|----|-----|-----|------|
| | 정기 | 사회 I | | 사호 | ∮ Ⅱ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공통 | 사회 | 정 | 치 |
| | 법 격별 | 행 | % | 행 | % | 행 | % | 행 | % | 행 | % | 행 | % |
| 법 개 | 의 념 | 30 | 4.9 | | | | | 147 | 19 | 24 | 51 | 104 | 15 |
| 형 종 | [식 류 | 45 | 7.4 | | | | | 101 | 13 | | | 37 | 5.3 |
| ত্র | 의 :력 | 36 | 5.9 | | | | | 35 | 4.6 | | | 11 | 1.6 |
| 하 | 의 석 | 53 | 8.7 | | | | | 43 | 5.6 | | | 11 | 1.6 |
| | 질서 -법 | 49 | 8.0 | | | | | 45 | 5.9 | | | 193 | 27.8 |
| 소 | -계 | 390 | 34.9 | | | | | 371 | 48.1 | | | 365 | 51.3 |
| 행? | 정법 | 83 | 14 | | | | | 67 | 8.8 | | | 45 | 6.5 |
| 형 | 벌 | 51 | 8.4 | | | | | 49 | 6.4 | | | 36 | 6.5 |
| 소속 | 사 송법 | 13 | 2.2 | | | | | 18 | 2.4 | | | 15 | 2.2 |
| | l사 송법 | 16 | 2.6 | | | | | 10 | 1.3 | | | 16 | 2.3 |
| 소 | :계 | 163 | 27.2 | | | | | 144 | 18.9 | | | 112 | 16.2 |
| | 총칙 | 72 | 1.2 | | | | | 39 | 5.1 | | | | |
| 민법 | 물권 | 21 | 3.5 | | | | | 25 | 3.3 | | | 135 | 19.5 |
| CD | 채권 | 17 | 2.8 | | | | | 21 | 2.8 | | | 100 | 10.0 |
| | 신분 | 5 | 0.8 | | | | | 19 | 2.5 | | | | |
| 상 | -법 | 39 | 6.4 | | | | | 54 | 7.1 | | | 2 | 0.3 |
| 소 | :계 | 154 | 25.5 | | | | | 158 | 20.8 | | | 137 | 19.8 |
| 노 | 동법 | 49 | 8.1 | | | | | 54 | 7.1 | | | 7 | 1.0 |
| 경7 | 제법 | 13 | 2.2 | | | | | 17 | 2.2 | | | 8 | 1.2 |
| | -회 장법 | 15 | 2.5 | | | | | 19 | 2.5 | | | 11 | 1.6 |
| 소 | :계 | 77 | 12.8 | | | | | 90 | 11.8 | | | 26 | 3.8 |
| 국> | 제법 | | | 64 | 100 | 65 | 100 | | | 11 | 23 | 62 | 9.0 |
| 총 | -계 | 607 | 100 | 64 | 100 | 65 | 100 | 763 | 100 | 47 | 100 | 693 | 100 |

교육과정기별 법교육 관련 교과서의 전체 내용 중 일반법에 관련된 내용(헌

법 관련 내용은 제외)을 행수에 따라 분석하면, <표 Ⅳ-3>과 같다.

교육과정기별 교과서에서의 헌법을 제외한 일반법 영역은 교수요목기보다 제1,2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감소되었고, 아직까지 법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선정되거나 정립되지 못하였던 시기라고 보아야겠다.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과서가 '정치·경제', '사회·문화'로 편제되면서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헌법을 제외한 법교육 단원(IV. 국민 생활과 법)이 독자적으로 신설되었기에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법교육이 시작된 계기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79년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여볼 때 1980년판 교과서는 1970년판 교과서보다 감소된 항목 즉, 민법, 국제법, 행정법, 형법, 법일반,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회법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국제법은 삭제, 법질서와 준법의 부문은 신설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는 '사회 I', '사회Ⅱ'교과서에서 총 671행으로 1980년 교과서보다 171행이 증가하였으나 1979년판 교과서보다는 감소하였다. 법 일반 영역은 1979년 1980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준법과 질서영역이 신설된 1980년에 비해 바로 다음 교육과정에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사회·문화', '정치·경제'의 경우는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 비하여 법일반 영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상법의 영역도 소폭 증가하여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법교육의 내용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는 법일반과 민법 중심의 내용이 비중 있게 분포하였고 특히 준법과 질서 영역은 제5차 교육과정 대비 4배 이상의 큰 증 가를 보였다. 이에 비해 상법이나 사회법에 해당되는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 장법 등은 감소되었다.

법교육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힌 제3차 교육과정, 1979년판 교과서부터 현행 바로 이전인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까지의 일반법 영역별 내용이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기준(교과서 행)으로 우선순위별 분석을 하면 다음과<표 IV-4>과 같다.

<표 IV-4> 제3차 ~ 6차 일반법 영역의 우선순위³⁶⁾

| 시대 | 교과서 |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1979년도 | 구분 | 민법 | 법일반 | 행정법 | 사회법 | 형 법 | 국제법 | 상법 | 형소법 | 민소법 |
| 3차 | 정치 · 경제 | % | 23.9 | 15.8 | 15.0 | 14.3 | 9.3 | 8.9 | 7.3 | 3.8 | 2.2 |
| 교육과정 | 1980년도 | 구분 | 사회법 | 민법 | 법일반 | 행정법 | 준법 | 형 법 | 상법 | 형소법 | 민소법 |
| | 정치 · 경제 | % | 20.2 | 19.2 | 17.4 | 14.0 | 11.0 | 7.0 | 6.2 | 2.8 | 1.4 |
| 4차 | 사회 | 구분 | 법일반 | 민법 | 사회법 | 행정법 | 형 법 | 준법 | 상법 | 민소법 | 형소법 |
| 교육과정 | Ι, Π | % | 26.9 | 19.1 | 12.8 | 14 | 8.4 | 8.0 | 6.4 | 2.6 | 2.2 |
| <i>5</i> 차 | 사회· | 구분 | 법일반 | 민법 | 사회법 | 행정법 | 상법 | 형법 | 준법 | 형소법 | 민소법 |
| 교육과정 | 문화 | % | 42.2 | 13.7 | 11.8 | 8.8 | 7.1 | 6.4 | 5.9 | 2.4 | 1.3 |
| 6차 | -1 -1 | 구분 | 준법 | 법일반 | 민법 | 국제법 | 행정법 | 형법 | 사회법 | 민소법 | 형소법 |
| 교육과정 | 정치 | % | 27.8 | 23.5 | 19.5 | 9.0 | 6.5 | 5.2 | 3.8 | 2.3 | 2.2 |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79년도 민법과 법일반, 행정법 순으로 나타났으며 80년도에는 사회법, 민법, 법 일반 순으로 나타났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법 일반이 26.9%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민법, 사회법 순이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법 일반의 영역이 6차 교육과정의 기간 중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준법 영역과 법일반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민법과 법일반 사회법이 법교육의 우선순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추이이며 그 외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등이 중간정도의 비율로, 다음으로 절차법에 해당하는 법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법일반 영역에도 준법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를 확연히 구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역으로 대두된 것은 제 6차 교육과정이다. 또한 국제법은 제 3차 교육과정 79년판에 언급되었다가 제 6차 과정에와서야 영역별 구분이 될 정도의 분량으로 다시 편성 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³⁶⁾ 김대수,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72.

V. 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의 분석을 통하여 현행 법교육의 위치파악과 각 영역별 내용분석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적 접근으로 법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 문제점

1. 비중적 측면

기초적인 법 교육을 마무리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필수과정에서의 법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온 실정이며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라는 법교육의 독립 교과서가 신설되긴 하였지만 이 역시도 선택과목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실제로 실업계 학생들과일반 고교생 중 '법과 사회'를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 학생에게 '사회'과목이법교육의 종착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법과 사회를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과 법과대학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사회'에서 언급하는 소량의 법 교육으로 법치 사회에서의 제반 법률 거래와 권리, 의무 관계가 동반되는 법률 행위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선택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 교과목도 다른 심화선택 과목에 비해 단위수가 적어 양적 축소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교육의 양적 축소는 곧바로 질적 문제로 연결되고 사회 생활의 복잡 다양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법 생활 관계의 중요성과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민주사회의 시민 자질 향상이라는 사회과 교육목적에도 정면으로 배 치되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 에서는 효율적 법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현 시대적 상황에서 법생활 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미래의 법교육의 방향에 있어서도 불 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으며, 법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 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표 V-1> 제 7차 교육 과정의 사회과 편제³⁷⁾

| | 교과목 | 및 단위 | 필수 선택 |
|----|------------------|---|-----------------------------|
|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사회(10: 국사 4단위 포함) | 공통 필수 (필수) |
| 사회 | 선택 중심 교육 과정 | 인간 사회와 환경(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6)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8) 사회·문화(8) | 일반선택 과목(선택) 심화 선택 과목(선택) |

2. 내용적 측면

전체적으로 법의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필두로 개인, 사회, 국가생활의 순으로 배열하고 있어서 법교육의 내용 배열은 이론적 배열의 조직원칙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 졌다고 보며, 내용 구성면에서도 재산상속법, 부동산거래법, 학교생활과 법, 여성과 법, 소비자 보호법, 환경권에 대한 법, 국제분쟁법 등의 실질적인 생활 관계법과 다양한 법률내용을 추가하고 있어서 이전 교육과정의 법 교육 내용편성보다 상당히 구체화되고 현실감이 보완되

³⁷⁾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대한교과서주식회사,2001), P.10.

어져 있다. 그리고 각 후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 법개념·이론에 대한 법 지식을 이해시킨 후, 그와 관련되는 법적 사례와 판례를 통한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사례와 판례의 법적 쟁점 분석 및 탐구학습의 절차에 통한 학습자 주도적 접근의 유도는 현 교과과정에 부합하는 결과라 본다. 법교육 내용선정과 계열성의 논리와 학습자의 인지적·도덕적 발달과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내용의 계열성 문제 등도 이전 교육과정에비해 상당히 수정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법과 사회' 교과서의 몇 가지 내용상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① 기본법영역 중에서 기업생활과 법에 대한 영역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발달단계에 맞춘 법 내용의 조직과 배열을 고려하여 필수적 요건만을 구성하였다고는 하나 현대시민 생활상의 제반 거래 활동이 기업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비단 기업의 사소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기보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는 이 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기업은 각각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주식회사, 어음·수표법 등의 내용은 고등학교 심화 과정의 수준에서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 교육 내용은 개인에의 경제법에 대한 영역으로 파생될 수 있으며 본 교과에 비추어 볼 때 경제법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여 지는바 경제법에 대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의 접근과 동시에 내용의 편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② '국가 생활과 법' 영역에 지식 정보화 사회인 오늘날의 행정 기관이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행정정보공개제도)와 행정 기관 또는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자기 정보관리 통제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에서 아무리 행정권이 확대·강화되고 있더라도 행정의 민주화·국민의 사생활 영역의 자유의 보장 등은 우리 법질서의 골간을 유지하는 불멸의 가치관에 속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미디어의 영향이 많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언론기관과 관련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자유와 제한을 다루어 신문협회나 방송협회의 강령을 소개하여 언론을 주체로 한 자유의 범위 및 기본권에 대한 접근해 보고 다음은 헌법 재판소나 언론에 대치되는 여러 대상에서의 법적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다각적인 법 쟁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할 것이다.

③ 지적 소유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5단원의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에서 저작권의 분류로 산업재산권과 지적재산권으로서간략한 분류정도가 전부이다. 이를 5단원 즉 법체계의 어떤 결론 부분으로서의 언급이 아니라 민법 영역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비중 있게 다룰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정보시대는 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비된다는 점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이 극도로 발달된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적으로 정보가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낳는 정보시대에는 정보창작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다. 개인의개성과 창의성이 곧바로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부와 국가의 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가 필수적인 경제자원으로 기능하는 정보시대에서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중요성 부각은 필연이다. 일정 정보를 재산권의 대상으로 삼아 그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무수한 정보를 산출하는 정보시대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있음으로 정보 창작자는 법적 보호를 받게되고, 그에 힘입어 양질의 정보가 확대 재생산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각종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은 정보시대에서 귀중한 자원이며 필수적 경제재이다. 지적재산의 존중의식이 고양될 때 정보창작은 왕성해지며, 그로 인

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확보된다. 창조의 바탕이며 부를 확보하는 원천이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제고를 높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 정보화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가 기본권으로 자리할 시대적·이론적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과학 기술 관련법, 사이버법등에 관한 기초적인 법지식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④ 국제법과 국제분쟁에서는 현실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로 접근하여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문제 혹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문제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를 다루는 국제거래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의 언급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본다.
- ⑤ 법 교육 에서 그 내용의 이해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생소한 법률용어와 어려운 내용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도움말과 함께 작은 용어 풀이에 해당되는 구성이 있긴 하나 그 것만으로는 어렵고 생소한 법률용어나 의미파악이 힘들 것이다. 이에 뒤에 제시한 부록의 페이지를 늘려 법률 용어 사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⑥ 사례와 판례 및 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 과목은 심화과목으로서, 국제화·정보화시대의 법 수요에 맞추어서 교과내용의 편성이 되어야할 것이나 사례나 판례의 적용이 현 시대적 흐름에 뒤쳐져 있다고 보여 진다. 각 법 영역에 따라 가장 원론적이고 핵심적인 판례나 사례가 존재함으로 기초적인 법이론 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현 생활의 실정에 맞게 학습자로 하여금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학생본위의 대상에서 접근한 법적 사례나 최신판례의 자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진의 자료는 사례나 판례, 혹은 법 이론의 상징적인 제시 역할과 동시에 내용 보충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진 자료의 제시는 5, 6차 교육 과정의 그것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보다 현실에 적합한 그리고 현

시대적 법적 흐름을 상징적 구도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형식적 측면

형식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법 교육은 단순한 교과내용의 전달만으로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어렵다.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문의 성격. 학습자의 배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올바른 수업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수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고 다양한 수업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법 교육을 실시하 는 과정에서 교사들을 충분한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중요한 법 분 야를 수업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다룰 수 있으며 법 교육을 법의 역사적, 정 치적 면에 한정시킬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법적, 정치적 행위 의 능력을 기르는 법교육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행정 체제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교육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요즈음 부르짖고 있는 교육개혁이란 말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용 어가 아닌가 한다. 사실 알선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교육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교육개혁이란 말은 말뿐이 아닌가 생 각된다. 과연 교실 현장에서 무엇이 개선되고 있는지, 교육개혁이 제도적 측 면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진정한 교육개혁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B. 개선 방안

1. 비중상의 개선방안

a. 법교육의 목표 재정립

고등학교 법교육 목표는 사회 생활 속에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법치주의의 원리와 절 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법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법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해 정보화 지식을 습득하여 법 현상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법적 문제나 쟁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정의실현과 질서유지라는 보편적 법이념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지니게 한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민주주의사회에서 법의 필요성과 사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과 소속집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의 권익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합법적 방법과 절차를 제시할 수 있으며, 법과 관련된 보고서나 기록 및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의 다양한 법현상과 쟁점 침 발전방향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법적 문제 사태와 관련된 기사나 판례분석을 통하여 법적 갈등이나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며, 법치사회구현과 정의사회실현을 위한 입법·행정·사법과정의 전 영역에 민주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자유 민주주의사회의 법체계와 법절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며 자유와권리의 행사에는 책임과 의무를 고려하여 공공복리증진과 사회질서유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b. 단위 수의 확대

심화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과목의 단위 수를 늘여 타 교과의 비중만큼

법교육의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하며, 또한 고등학교 공통 필수로의 법 교육에 있어서도 「법과 사회」과목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공통 기본교육으로서의 법 교육 내용이 '사회'과목 상 대단원의 편제로 구축 되어야 한다.

2. 내용상의 개선 방안

a. 청소년 문제에서의 법 교육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이 형벌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의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 로 각국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청소년은 다가올 세대의 주역이기에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의 문제는 바로 다음 세대의 각국의 미래상 내지는 민족상을 위한 건설의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991년에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청소년 기본법(1991년)및 청소년 보호법(1997)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현상적 문제들에 대해 우려하고, 분석하고, 그에 관한 사후적인 대책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 상 나아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도·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현대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주적인 문제 해결능력의 부족, 준법 의식의 박약, 청소년 범죄 등의 범죄 발생률의 증가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도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인 청소년 폭력·약물·성범죄 등의 범죄 발생률의 증가와 더불어,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청소년의 컴퓨터 범죄의증가도 새롭게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사전적·예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종래의 청소년에 대한 주입식 법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청소년 상을 확립하는 새로운 법 교육의 방향과 체계를 정립함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간단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규모로 장시간에 걸쳐 시행된 한 실증적인 연구 보고에 의하면 법 교육이 적절하게 실행될 경우,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와 규칙위반행동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8)이 외에도 다른 소규모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적어도법교육이 오늘날 학생들의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독일 사례에서도 청소년과 마약문제에 대한 법 교육 이 학교 법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 알코올, 약물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법교육과 관련된 것으로는 우선 합법적인 약물과 불법적인 약물을 설명하고 약물 남용에 대한 형벌을 관련 법률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마약 중독과 관련하여 어떤 곳에서 치료 혹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관공서나 전문기관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관공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법 교육 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20면에 걸쳐서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3면이 법 교육 에 직접관련된 것이고 약물 사용에 대한 찬반의 토론은 약물남용을 급하고 처벌하는 법규의 법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포함 시킨다면 3면이추가된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법과 사회」등 학교 법 교육을 통해 법이론 적 측

³⁸⁾ 김수정,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와 법교육"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p.112에서 제인용.

면과 더불어 이러한 실질적인 범죄 예방 학습의 차원으로 법 목표 와 내용구성을 새롭게 정비하거나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 정보화 사회에서의 법 교육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법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 법학 개론식, 법 지식 위주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뒤늦은 교육도 문제가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며, 이러한 현상들도 곧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미에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과 법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가치 분석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법 교육 에서는 인지적인 행동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의 행동도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고, 가치관을 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도 법 교육 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변동이 빠르고 복잡한 사회에서 학생들은 가치관의 갈들을 경함하기 쉽고,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방황하게 될 때가 많을 것이다.

가치관은 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인 반응의 경향 또는 평가의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분이되는 것이며 행동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법 교육에서도 이러한 가치교육을 가치명료화 접근법이나, 가치 분석법 등의 방법으로써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그들에게 제기되는 선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2) 정보화 윤리 의식을 고려하는 법 교육 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그리 밝지 못하다. 그 연령대가 10대나 20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학교 교

육에서 소위 '컴퓨터 윤리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교육'이라고 해서 '도덕'이나 '윤리'과에서만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컴퓨터'라고 해서 해당 정보교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특히 현행 정보 관련 교과들은 정보화 사회의 정보 습득의 지식영역에만 치우쳐 정보 의식이나 정보 문화, 정보윤리 등의 태도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컴퓨터 윤리도 가치관 정립이나 도덕성 발달, 법의식 등을 다루는 법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컴퓨터 범죄도 현 사회의 범죄 양상중의 하나인 만큼, 범죄의 예방차원에서도 컴퓨터 윤리교육 혹은 정보 소양교육은 법교육 에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법 문제의적용이 필요하다면 법교육의 한 형태로서 접근이 더욱 시급하며 이는 사회현실상 윤리의 문제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 교육으로서의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고 생각한다.

3. 형식적 측면의 개선방안

(1) 법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재정립

사회과 교육의 교수 학습과정에서 운용되는 교수 전략에 대해 요구되는 새로운 방향에 관해 모리셋(Iving Morrissett)교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는 바 이는 법 교육에 활용되는 교수·학습 전략의 모델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참조해야 될 것이다.

첫째, 학습자의 모든 행위와 경험의 부여시기에 대한 통제 및 보호라는 책임으로부터 교사는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 스스로 그들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실제 경험하여 보는 학습활동을 취한다. 넷째, 교실 학습에서 벗어나 도서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비율을 높인다.

다섯째, 교과서 이외의 학습 도구를 개발, 확충한다.39)

법교육의 교수·학습 전략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교사가 법 교육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풍부히 지니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수·학습 전략의다양한 활용에 대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수·학습 전략의 채용에는 학습자의 발달 과정 및 사회 인식의 수준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모델을 적용하되 학습을 통해서 단편적인 법 지식의 습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법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있는 교수 전략의 운용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종전의 법 교육 은 이론중심의 강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서는 고 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론 중심의 강의보다 세미나 혹은 판례연구 등 다양한 사례위주 교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정 규모의 수업 단위는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강좌의 성격(국민공통, 일반선택, 심화선택)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수업 단위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총망라하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민주시민으로서 구비해야할 기본적 자질로서 법에 대한 기초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형성하는데 적합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을 선택하여 운영해 나 간다. 예컨대 법적 사례나 판결문을 새로 각색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사건 속 의 인물이 겪는 상황을 체험하고 법적 갈등 사태를 감정 이입의 상태로 공감

³⁹⁾ 김이숙, "중학교 법교육의 실태와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 교 교육대학원, 2002), p.94.

하고 법적 논리를 탐구하도록 하는데 에는 역할놀이나 모의재판(Inocktrial) 같은 교수 방법을 적극 적용하여 학습자의 흥미 고취와 생생한 체험 을 교실 에서 느끼게 한다.

- ② 법적 관계를 시민과 사회, 국가, 국제 사회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 문제와 쟁점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 러므로 살아 있는 법적 사건이나 쟁점을 법교육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교육의 과정에서는 항시 학습자 주도적으로 탐구력과 사고력을 키워 하는 능력을 강조해 나간다.
- ③ 교과 중심의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인 하달식이 아닌 학생 중시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과 열린 교육, 개별화 학습, 집단 및 토론 학습, 신문이나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NIE학습, 현장 견학 학습들을 권장해 나간다.
- ④ 법체계와 법 절차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가치 내면화 교육을 강조하며, 법리 탐구나 법적 사고력의 배양에 이바지하 기 위한 법적 사례 연구법(legal case study mwthod)의 다양한 활용을 한다.
- ⑤ 법교육의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학습자 스스로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수업이 유용하다.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방법을 익히는 체험기회를 많이 가져야 자연스럽게 법리 습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교사는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 등 고등 사로 기능을 산장시키는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 ⑥ 1년에 1,2회 정도 법원이나 국회, 경찰서 교도소 등 법을 다루는 국가 기관의 현장 견학을 통해 법 준수에 대한 태도 형성을 갖추는 기회를 가지 고, 사법 적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 ⑦ 법적 쟁점과 갈등 사태의 해결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흔히 경함하기 쉽고 체험한 바 있는 소비자 문제, 성차별 문제, 환경문제, 컴퓨터 범죄 문제, 프라이버시권 침해, 안락사, 등의 법적 쟁점(legal issues)을 다루어 학습자의 법적 해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 ⑧ 법적 관련 쟁점을 법문화의 비교 문화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의 저명한 법률 판례를 영화화한 것을 시청하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법 갈등 사태를 다룬 영화, 비디오 시청과 토론 학습 을 하여 학생의 흥미감을 고취한다.
- ⑨ 교수·학습 과정에서 법적 사례로서 제시되는 사건기사나 법원의 판결문,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 또는 외국의 유명한 판결문이나 사건 소개는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소개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고, 법리 탐구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고취한다.
- ① 법교육의 교수·학습과정에서는 필요 핵심적 내용(minimum essentials : 법교육의 key concepts)을 추출하여 고교생의 사회적 발달과 경험 수준에 비추어 적합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선정하여 지도함으로써 법적 소양과 사고력을 기른다.
- ① 헌법 교육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기본권 인권 교육과 통치 구조론 이다. 헌법상의 통치 구조 및 국가 권력자용은 정치과목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법과 사회에서는 기본권 교육(tuman rihts education)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이 구성되고 가르쳐져야 할 것이다. 이때 유명한 기본권 판례나 사건의 소개 등을 한다.
- ① 사회 변동과 발전에 따라 법의 내용이나 법리의 발전,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법 내용이 동태적 측면과 법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사회의 법 현상은 매우 복잡다기하고 전문적이며, 법적 현상의 발생과 소멸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 ①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력 있는 배려의 제공자로서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강조되는 것이다. 교사는 법교육의 교수·학습 실천 과정에서 하나의 본보기, 거울과도 같다. 법교육 과정에서 법적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감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전형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키워주며, 법적,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시

민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학생들에게 법체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법 준수의 자세를 길러 줄 수 있다.

(2) 법 교육 교사 양성과 재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법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과 야성에 대해서는 독일의 법 지향적인 방식과 미국의 일반사회과 지향적인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를 보면 노르트라인베스터팔렌주에서 법 교육 교사는 1976년부터 보쿰대학에서, 1980년부터 하겐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설파하면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법교육사를 기본적으로 법률가교육에 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법 교육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 이론적인지식뿐만 아니라 법 제사, 법사회학, 법 철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로 한다고보아 보쿰대학의 법 교육교사 교육과정에서는 법제사와 법철학에 대한 청강이 필수적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과정은 없다. 다만 대학에는 교양 법 강좌가 설치되어 있다. 미국의 모든 주논 교사이용의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10개의 주는 교사지원자에게 주와 연방의 헌법을 공부한 것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모든 법 교육프로젝트는 법률가가 아니라 교사가 법 교육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지식에 대한 신뢰가 독일에 비하여 높고 교사들이 연수나 법률가와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법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의 결여로 법 교육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사의 연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는 경력교사들에게 연수시설의 졸업을 요구한다. 법 교육 프로젝트들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다양한 연수 가능성은 주로 변호사 협회나 대학의 관심에 의한 것이다.40)

⁴⁰⁾ 허종열. "미사회과 법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사 양성 체제." 『사회와교육』 no.23.

다양한 연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교사들은 내용적으로 하자 없는 법 교육 수업을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업의 준비나 수행에 있어서 법률가와 협력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된다. 작업 활동을 하는 법률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 교육 프로젝트는 법과 대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양한 법 교육 프로젝트들은 흥미를 가진 법과 대학원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일주일간 법과 대학원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일주 일간 법과 대학원의 한 세미나를 출석하고 며칠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되어 있다. 세미나에서는 학교의 법 교육에서 의미가 큰 실제적인 법지식과 수업방법을 가르친다.4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독일에서의 교사 양성체제 및 운영체제를 살펴보았다. 법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국가와 사회 생활에서 행위 규범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교사의 자질과 양성에 대해서도 법학적 측면과 교육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3) 행정 체제의 재정립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배경에 나타나고 또 개정근거를 들어 제시한 바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의 개선,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교육, 자주적학습 능력의 신장, 학습자의 과목 선택에 의한 교육의 시도 등 그 필요성에 대해 현 교육현황과 행정청의 지원과 체계가 얼마만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법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법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건이 조성되었는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열을 쏟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사안이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지방의 특

^(1996. 8) pp.355.

⁴¹⁾ 오은아, 전게논문, p.84에서 재인용.

색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전개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지 않는 제도 개선안은 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제안이라고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반드시 교육전문가들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어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 조직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행정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적 성격이 강하여 교육제도의 본질을 등한히 함으로써 제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 교육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행정 체제에 있어 획일화, 경직성을 여전히 남겨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 집권식 교육제도 개선은 교육활동에 장애가 될 뿐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해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 질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진정 시급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의 문제이다.

현 입시 위주의 전력 적 교육 상황으로 볼 때 법 교육 또한 입시의 한 영역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진정한 법 교육 목표의 내면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다.

이에 보다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는 행정체계가 7차 교육과정을 폭넓게 지원하고 이로써 법 교육 및 여타 교육에 대한 시간적, 행정적, 상황적 맥락이활발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치주의 사회이므로 모든 개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 법에 의하여보호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법치주의란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통치가 자의가 아닌 법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요구하는 통치원리이며,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의미한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존재할수 없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더욱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법은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기능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법 생활적 요구에 따른 법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으로서 법교육의 실익은 법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와 수단을 알게 되며, 법학이 논리적인 학문이므로 자신의 사고와 표현을 논리 정연하게 형성할 수 있으며, 법적 가치와 정의를 이해하여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법적 개념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적 생활관계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게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결국 법교육은 개인을 민주사회구성원으로서 자질을 함양케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며 이는 큰 맥락에서 사회과의 기본적 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껏 사회과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온 법교육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여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의 위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법교육의 형식을 갖추어 온 제 3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 법교육은 양적 축소 및 감소의 추세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점

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있어 증대되는 법 생활의 요구에 대해 법교육의 실정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법교육의 분석은 우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법교육과 심화선택과정으로 신설된 「법과 사회」의 내용분석으로 분류될수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의 과정으로 내용이 연계되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법교육 내용의 논리적 구성,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구성,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구성의 측면을 고루 반영하고 있었으나 법교육 내용상의 양적 축소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고등학교 법교육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볼때, 10학년 '사회'과목에서 법교육 내용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법교육 독립교과인 「법과 사회」과목의 신설이 법교육의현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하나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법과 사회」과목 또한 선택과정인 심화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단위수에 있어서도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의 양적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하겠다.

「법과 사회」과목에 나타난 법교육 내용선정과 배열에 따른 분석에서는 전통적인 법교육 내용에서 나타난 지식중심, 교사중심, 실생활과 유리된 내용의 선정과 지식 체계별 단성형 조직, 문장 삽화의 단조로운 구성에서 어느정도 탈피하고자 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실, 사례제시형, 학습과정 중시형의 진술형태를 보이고 단원의 전개 체제에서는 전교과서에 하나의 전개 체제에서 탈피해 단원, 주제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전개 체제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또한 내용선정에서는 핵심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경험, 사례·판례 중심, 학생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이것은 교과서내용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내용조직측면에서는 위에 언급한 내용선정을 기초로 하여 관련지식과 실생활의 통합

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인간 상호간의 법적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현대 사회에서 법교육이 양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민 자질 향상과 사회과 목적에도 배치된다.

둘째,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법교육 내용이 현실에 뒤떨어져 있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도 달라져야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곧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사회과 교육은 백화점식 교육으로 인해 현행 사회과 교사의 배출방법으로 전문적인 법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넷째, 종전의 법교육 수업은 이론 중심의 강의가 주를 이루어왔다. 법교육 의 학습은 단순한 교과내용의 전달만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행 법교육 독립 과목인 「법과 사회」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에 착안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법현상을 이해하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법적 문제나 쟁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의실현과 질서유지라는 보편적 법이념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 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지니게 한다.

둘째,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법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가치 분석 능력을 함양의 필요성, 학습자의 자아정체감이나 도덕성, 심리적 발달 단계에 따른 법의식의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제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실용적인 법교육의 대안 마련, 정보화 윤리 의식을 고려하는 법교육 보완 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셋째,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과 양성에 대해서 독일의 법 지향적 인 방식과 미국의 일반사회과 지향적인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실 정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고 교사양성과정에서 법교육에 관한 전문훈련과함께 각급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직연수를 강화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법교육의 실시로 법적 사고력을 형성하고 개신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갈등상황을 해결하려면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교사중심의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학습, 모의재판, 자원인사초빙강연, 판례탐구법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해 나가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 사회의 법 현상은 더욱 복잡·다양하고 전문적일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현상의 발생과 소멸 또한 혼재하여 그 변화의 예측마저 곤란한 만큼 학교 교육으로서의 법교육, 특히 고등학교 법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사회 생활 속에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올바른 문제 해결능력을 육성하고, 법치 사회의 실현과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질서유지와 정의실현에 요구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점차 증가하는 국제법적 쟁점이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법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단행본)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교육부,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 주-천재교육, 2003.

교육부, 『고등학교 법과 사회』. 주-교학사, 2003.

교육부,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2.

교육부, 『중학교 사회』. 주-동화사, 2003.

김원주 외, 『법학통론』. 서울: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1991.

홍성찬, 『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7

2. 국외문헌

- C. Pereiea. 『Law-Related Education in Eiementary and Secondary Schooll』, New York: ERIC, 1998.
- Linda W. Rosenzweig,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ocial studie s, Washington D.C: NCSS, 1982.
- Theodore Kaltsounis, Teaching Social Studies in the Elementary School [1] (Englewood Cliffs, New Jeresy: Prentice Hall Inc., 1987)
- U.S Office of education. Final of the study group on Law-Related Educat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ht, Education, and welfare, 1978.

3. 계속간행물

허종열, 『사회와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no.23, 1996.

4. 국내문헌(논문)

- 김대수,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김병수, "시민교육으로서의 사법교육 강화의 필요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김수정,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와 법교육"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 김연식, "고등학교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분석"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김이숙, "중학교 법교육의 실태와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석사학 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류성욱, "고등학교 학생의 법의식과 법교육 조사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오은아,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임희창, "고등학교 학생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992.
- 장순애, "법교육이 민주시민 자질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1993.
- 전석재, "고등학교 법교육 교재의 교육과정 적합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1999.
- 최강병, "법과사회 과목의 학습목표 상세 화와 내용선정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최인화, "사회과 법교육의 원리와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1889.
- 최인화,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1992.